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126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126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2653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유장미, 박영규

피고, 항소인 1. A

2. B

변론 종결 2022. 4. 27.

판결 선고 2022. 5.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2653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은 원고에게 9,199,627원 및 그 중 8,816,567원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09. 10. 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5. 1.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비추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고령이고 경제력이 없는 피고 B를 위하여 30여 년간 망인과 함께 살던 집에 모시고자 자식된 도리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사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B는 1939년생으로서 고령의 나이로 2022년 1월 7.일, 10일, 12일

3차에 걸쳐 치매검사를 받았으며 우울증과 기억력, 인지장애가 있고 피고 A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인 피고 A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 A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 A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또한 추정되고 피고 B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의 앞서 본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수경

판사김우현

판사이창열

별지

1) 피고 B의 항소 취지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부분이 누락되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